

공 시 송 달 공 고

자연공원법 위반자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하고자 주소지로 통지하였으나 보관기간 경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.

2017. 10. 10.

경 주 시 장



자연공원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공고

- 1. 공고기간 : 2017. 10. 10. ~ 2017. 10. 25.(15일간)
- 2. 송달대상 : 이○천
- 3. 송달내역

자연공원법 위반자		위반일자	위반내용	위반장소	과 태 료 부과금액	반송사유	공고기한	관련법규
성 명	주 소							
이○천	경주시 초당길31번길 ** ***호	2017.08.05	취사행위	도함산 (추령다리밑)	100,000	보관기간 경과	2017.10.25	자연공원법 제27조 제1항

4. 유의사항

- 가. 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,
- 나. 공고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규정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3%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며,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경과 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.2%의 증가산금이 최대 60개월간 부과(최고77%까지) 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며, 같은 법 제52조(관허사업제한), 제53조(신용정보제공) 및 기타 재산압류 등 불이익이 있음을 알려드리니 과태료 납부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5. 문의처 : 경상북도 경주시 환경과(T : 054-779-6365, F : 054-760-7415)